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- 673호

「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령(안)(수정안) 재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령(안)(수정안) 재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「건축물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8824호, 2022. 2. 3. 공포, 2022. 8. 4. 시행)됨에 따라,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과 필수확인점 표기사항을 구체화 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을 명확화 (안 제13조제2항)
- 나.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 우려할 사항을 구체화 (안 제13조제4항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(수정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건축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재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수정안	재수정안	의견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330호  
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
- 전화(☎) 044-201-4989,4986 / 팩스 044-201-5575